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4 선고 2020가합526980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대한민국

피 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둘로스

담당변호사 정윤환

변 론 종 결 2021. 4. 30.

판 결 선 고 2021. 6. 4.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8. 8.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B은 2018. 7. 6. C 외 2인에게, 서울 용산구 D 소재 부동산을 3,564,000,000원에 매도하였고, C으로부터, 2018. 7. 6.에 계약금 360,000,000원, 2018. 8. 6.에 중도금 1,440,000,000원, 2019. 1. 7.에 잔금 1,764,000,000원을 각 지급받았다.

나. 2018. 8. 27. 당시 B의 재산상태는 적극재산이 2,644,250,506원, 소극재산이 2,577,484,840원으로 적극재산이 소극재산보다 많은 상태였는데, 2018. 8. 27. 처남인 피고의 계좌로 69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적극재산이 1,954,250,506원으로 감소하게 되어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623,234,334원 초과하여 채무초과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

다. 그 후 B은 2019. 3. 22. 위 가.항 기재 부동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관할 세무서장인 도봉세무서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납부를 고지받았음에도 이를 납부하지 않았고, 2020. 1. 20. 기준 가산금을 포함하여 총 934,882,520원을 체납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1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B에 대하여 934,882,520원 상당의 조세채권이 있는바, B이 2018. 8. 27. 피고에게 690,000,000원을 증여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으므로, B의 위 2018. 8. 27.자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B과 피고 사이의 2018. 8. 27.자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 단

가. 위 기초사실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B이 2018. 7. 6.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2018. 8. 27. 당시 가까운 장래에 원고의 B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의 조세채권이 성립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고, B이 2019. 1. 8. 잔금을 수령하면서 2019. 1. 31.1)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되고, 2020. 1. 20. 기준 피보전채권액은 934,882,520원이다.

나.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2018. 8. 27. 피고에게 위 690,000,000원을 송금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렀는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B이 위 690,000,000원을 피고에게 증여함으로써 사해행위를 하였는지에 관하여 본다.

1) 살피건대, 갑 제4, 5호증, 을 제1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주식회사 E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9. 9. 19.경 피고에게 B로부터 위 690,000,000원을 송금받은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입증자료를 요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어머니인 F이 B 부부에게 생활비, 자녀학비,

주택구입비용 등을 빌려주었는데 F이 2018년경 사망하여 F이 빌려준 돈 중 일부를 받아낸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면서도 F과 B 부부 사이의 대여관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아무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명확한 지급 사유를 확인할 수 없었던 점, ② 피고의 위 진술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아닌 F이 딸

부부인 B 부부에게 생활비, 자녀학비, 주택구입비용 등을 지원해준 것인데, F이 사망한 후 피고

가 F을 대신하여 B로부터 돈을 지급받은 근거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바, 피고의 위

진술은 장모인 F으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B이 처남인 피고에게 위 69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어 보이는 점, ③ 그 후 피고는 원고로부터 이 사건 소를 제기당하자

기존의 진술을 번복하여 B로부터 캄보디아 부동산 개발을 위한 투자금 명목으로 위

690,000,000원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는바, 피고가 진술을 번복할만한 타당한 이유가 없어 보이는

점, ④ 또한, 피고가 B로부터 690,000,000원을 송금받은 계좌의 거래내역을 보면, 피고는 송금받은

돈 중 일부를 배우자의 계좌로 이체하고 카드결제 및 대출금 상환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와 B 사이에 투자약정서나 수익배분에 관한 합의서 등 처분문서가 작성된 사실이 없으며, B이

피고로부터 담보를 제공받는 등 투자금 회수를 위한 조치를 취한 사실도 확인되지 않는바, 이러한

정황들을 고려하면, 위 690,000,000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는 피고의 진술을 믿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B은 2018. 9. 27. 피고에게 위 690,000,000원을 증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고, B의 위 증여행위는 채권자인 원고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에 2018. 8. 27. 체결된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서 취소하고, 원상회복으로

수익자인 피고는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가액반환으로 위 69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김성원, 판사 배온실, 판사 구현정

1)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예정신고납부하는 조세로서, 국세기본법 제21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과세표준이 되는 금액이 발생한 달(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에 그 납부의무가 추상적으로 성립하고, 자산의 양도시기는 당해 자산의 대금을 청산하는 날이므로, 2019.

1. 31. 양도소득세 납부의무가 성립하였다.